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정관

- 개정 1956. 4. 20. 문교부장관인가
- 개정 1961. 4. 23. 문교부장관인가
- ” 1962. 1. 28. 문교부장관인가
- ” 1963. 1. 20. 문교부장관인가
- ” 1965. 2. 13. 문교부장관인가
- ” 1968. 5. 28. 문교부장관인가
- ” 1973. 2. 1. 문교부장관인가
- ” 1975. 8. 2. 문교부장관인가
- ” 1976. 11. 11. 문교부장관인가
- ” 1977. 4. 6. 서울시교육감인가
- ” 1984. 5. 22. 서울시교육감인가
- ” 1988. 11. 30. 문교부장관인가
- ” 1991. 3. 8. 문교부장관인가
- ” 1994. 3. 24. 문화체육부장관인가
- ” 1995. 5. 27. 문화체육부장관인가
- ” 2007. 3. 2. 문화관광부장관인가
- ” 2008. 5.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칭과 약칭은 “Korean Library Association”과 “KLA”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도서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 진흥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http://www.korla.or.kr’ 또는 ‘http://www.kla.kr’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도서관의 관리 운영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실시촉진

2. 기관지 및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자료의 편간
3.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지위향상
4. 도서관의 보급 및 설립 운영지도
5. 서지사업 및 양서의 선정 보급
6. 독서운동의 추진 및 지도
7. 도서관 관련 기준 및 규격의 제정·보급
8. 도서관 관계 자료실의 설치·운영
9. 도서관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10. 한국도서관회관의 건립·운영
11. 각국의 도서관 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제휴
12. 한국도서관상, 명예사서 등에 관한 사업
1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본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 회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단체회원 : 도서관, 학교 기타 도서관시설을 가진 단체
2. 개인회원 : 도서관 기타 도서관시설의 직원 및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한 자
3. 참조회원 : 본회 사업을 참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의 등급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명예회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이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
3. 이사 21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이사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이사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정관 제36조에 의한 각 부회 및 정관 제38조에 의한 지구협의회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이사 : 회장이 위촉하며 10인 이내로 선임한다.
- ③ 이사 중 법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당연직 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위촉직 이사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결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 중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지명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 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 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기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및 평의원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평의원의 선출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단체회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평의원회) 본회에는 평의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 1. 평의원 80인 이내
- 2. 평의원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하되 특별시, 광역시 및 도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관중별로 선출한다. 다만, 시, 도별 평의원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 3. 평의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부터 차기임원 선출 총회 개회시간 이전까지로 한다.
- 4.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5. 정기 평의원회는 정기총회기간중 개최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 (3)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 6.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 (2) 임원의 보선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의결 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 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도서관발전재단) ① 본회는 제4조 제10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3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회는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무총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처리를 위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부회 및 위원회

제35조(전문위원회) ① 본회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내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부회) 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종류별 부회를 둔다.

1. 공공도서관부회
2. 대학도서관부회
3. 학교도서관부회
4. 전문도서관부회
5. 기타 필요한 부회

제37조(기타 위원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 장 지구 협의회

제38조(지구협의회 설치) 본회의 각 시, 도별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지구협의회에 대한 보조) 본회는 지구협의회에 사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지구사업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42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회의 종류) 이 정관 제36조에 의한 부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협의회
2. 국립립대학도서관협의회
3.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4.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5.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6.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7.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8.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9.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제3조(지구협의회회의 종류) 이 정관 제38조에 의한 지구협의회회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2.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3.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